### [서식 예]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(판결편취 말소)

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김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이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원고에게 피고 이◇◇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. 접수 제○○호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, 피고 김◇◇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○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호로서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 중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.



## 청 구 원 인

- 1.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김◇◇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●●●가 김◇◇ 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원고는 소외 ●●●로부터 매수하 여 20○○. ○. ○○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
- 2. 그런데 피고 김◇◇은 아무런 이유 없이 20○○. ○○. 소외 ●●● 및 원고를 상대로 ○○지방법원 20○○ 가합 ○○○호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, 위 소송에서 피고 김◇◇는 소장, 기일소환장 등을 원고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의 소외 ◆◆◆에게 송달시켰으며 20○○. ○○. 선고된 피고 김◇◇ 승소의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형식상 피고 김◇◇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, 피고 김◇◇는 20○○. ○○. 위 확정판결을 가지고 소외 ●●● 및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말소하여 자기명의로 환원시킨 다음, 피고 이◇◇에게 매도하여 20○○. ○. □. 피고이◇◇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.
- 3.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○○. ○○. ○○. 우연한 기회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를 열람하는 기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김◇◇를 상대로 ○○고등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○○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추완항소가 인정됨으로써 위 피고1. 김△△의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 김◇◇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피고 김◇◇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.
- 4. 그렇다면 원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불법으로 형식상 확정된 피고 김◇◇ 승소의 제1심 판결은 판결확정의 효력이 없게 되었고, 따라서 무효인 판결에 의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, 무권리자인 피고 김◇◇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이◇◇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, 피고 이◇◇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

## 입 증 방 법



1. 갑 제1호증

판결문사본

1. 갑 제2호증

부동산매매계약서

1. 갑 제3호증의 1, 2

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4호증

토지대장등본

1. 갑 제5호증

건축물대장등본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# 부동산의 표시

- 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-ㅇㅇ 대 157.4㎡
- 2.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주택
  - 1층 74.82 m²
  - 2층 74.82m²
  - 지층 97.89㎡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 <b>망</b>	
		기	간	※ 아래(2)참조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3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	인사소송법 제390조) 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소멸시효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청구권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 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(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다2968 판결, 1979. 2. 13. 선고 78다 2412 판결).

#### ※ (3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

## 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